



특허사용협약서(안)



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
해양수산과

특 허 사 용 협 약 서

- 특 허 명 : 방사형 ~~핵사~~포드를 갖는 중공형 소파블럭 겸용
인공어초 (※특허 제10-1058167호)
- 발주기관 :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
- 특허 보유자(또는 협약대표자) : 주식회사 경봉기업
- 공 사 명 : 포항 칠포2리 인공어초 보강공사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포항 칠포2리 인공어초 보강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
과 신기술·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·특허공법
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·특허공법 부분만의 (기술
사용·시공)을 사용범위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·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
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기술사용료 등)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·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
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·특허 보유자는 신기술·특허공법이 사용되
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건설기술
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「건설신기술 기술사
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요율을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
동의한다.

② 신기술·특허 보유자는 상기 공사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
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, 신기술·특허
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하
여야 한다.

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”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하도급 등)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·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, 기술보유자가 **보유한 특수** 장비 등을 직접 사용(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)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·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·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(낙찰률이 80% 미만인 경우에는 80%)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.

③ 신기술·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,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.

제5조(설계변경 등)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·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·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신기술·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20년 12월 일

발주기관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

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**장 (인)**



특허공법 보유자 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09, 2층

주식회사 경봉기업 **(인)**

